(사)도시생명네트워크 부설 재가노인복지 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2 계약기간〕

1.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이용 대상자와의 계약기간은 계약을부터 장기요양 인정서 유호기간 범위 내에서 한다.

〔제13조 계약의 목적〕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치하여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며 수급자 관리 보호 및 보하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이다. 지역사회의 정신적·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을 위하여 요양보호사의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제14조 이용료〕

1. 이용료 및 기타 비용에 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을 따른다.
   ①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센터는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 (총 수가금액X본인부담율)을 대상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을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③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요 산정기준
   ①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한 "별첨1" 〔별표2〕와 같다.
   ②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간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한 "별첨1" 〔별표3〕과 같이 가산할 수 있다. 단, 야간,심야,휴일가산 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한 "별첨1" 〔별표4〕에 따른다.
   ②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제15조 그밖에 비용부담액〕

1.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센터와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해하여야 한다.
2.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하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에게 생기는 응급상황 이외의 병원 이용 시에 보호자와 사전에 협의한다.)
3. 수급자의 요청으로 장보기나 개인 물품 등을 구입한 경우 그 비용은 선불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대상자 (또는 보호자) 구입비용을 지불하고 급여제공직원은 영수증을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준다.
4. 치매특별등급 프로그램 진행에 소모되는 물품은 센터에서 물품을 준비한다.
   단, 특별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실 재료비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5.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2. 대상자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 할 권리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4.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조사,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사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제17조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해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기타 '센터' 의 협조요청 이행

〔제18조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해당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
3.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4.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5. 기타 '수급자' 또는 '보호자' 의 요청에 협조

〔제19조 수급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통보 의무
3.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임(수급자)의 건강사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양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수급자,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5.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제20조 수급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모든 수급자 어르신들은 본 센터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가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1조 서비스 품질보장〕

1. 비밀보장: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을 보장한다.

2. 기록 및 공개: 이용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이용자나 그 가족이 요구할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3. 부당청구금지: 이용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규정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지 않는다.

〔제22조 계약의 해지〕

1. 대상자(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한느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장기요야급여 제공시간을 대상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④기타 대상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상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②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활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⑤6회 이상 이용료(본이부담금)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⑥센터규칙이나 센터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운영에 지장을 줄 때
   ⑦6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 할 수있다.
   ⑧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3. 대상자(보호자)는 제22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센터'에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 할 수 있다.

4. 센터는 제22조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별첨1〕

▷등급별 재가급여 월 이용한도액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본인부담금
월한도액(원)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일반대상자 : 15% 경감대상자 : 9% 또는 6% 의료대상자 : 6% 기초생활수급자 : 0%

▷방문요양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가-1	30분이상	16,630	가-5	150분이상	48,250
가-2	60분이상	23,120	가-6	180분이상	54,320
가-3	90분이상	32,510	가-7	210분이상	60,530
가-4	120분이상	41,380	가-8	240분이상	66,770

▷방문요양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시각에 따른 급여비율 가산

서비스 제공시간	금액 (원)
22시 이후 06시 이전	[가, 급여비용]의 소정수가에 30%를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일요일	
「근로기준법제55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가, 급여비용]의 소정수가에 50%를 가산

▷방문목욕 급여비용

분류번호	분류	금 액(원)
나-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84,670
나-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76,340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7,670